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16호

「상주시 건축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,
- 나.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어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,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㎡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㎡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정함(안 제17조)
- 나.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완화(안 제17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19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